

제420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4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2. 공청회 개최의 건
 - 가.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
 - 나.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에 대한 공청회

상정된 안건

- | | |
|---|---|
|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
| 가.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 |
|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3) | |
| 2. 공청회 개최의 건 | 2 |
| 가.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 | |
| 나.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에 대한 공청회 | |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과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 및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장으로부터 1월 13일부로 김상욱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고 이만희 위원이 사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김상욱 위원님 간단히 보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소속 김상욱입니다.

농해수위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업과 어업 그리고 또 산림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정말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능력과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배우는 마음으로 또 국민들을 잘 받드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김상욱 위원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위원장 어기구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김상욱 위원님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시고 박덕흠 위원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김상욱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과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 순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가.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10시09분)

○위원장 어기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청회 개최의 건

**가.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
나.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에 대한 공청회**

(10시10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과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 방식은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취지를 감안하여 진술인 간 토론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들의 진술 요지, 관련 법률안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성승제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선우 소속 이석현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이석현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전상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의 정승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정승현 안녕하십니까?

(인사)

○위원장 어기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정부 관계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실시하고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먼저 오늘 보임돼서 오신 김상욱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당한

활약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언론 중의 하나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 지금 땡땡일보에서도 존경하는 국힘을 손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용을 보면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국회법은 국민의 대표자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지요, 웃기게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연석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13일 참석한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이지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저는 국민의힘이, 지도부의 한 사람이 말이지요, 농어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를 마치 제가 보기에는 유배 보내는, 좌천해서 보내는 위원회로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 같은 경우 지역구가 말이지요, 울산 남구갑인데 바다도 없어요. 해양도 없어요. 농촌도 없어요. 울산의 한복판 대도시입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울산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경한 지도부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리 농어민과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벼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공직사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집단 린치 문제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공청회인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이병진 위원 제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제가 의사진 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청회 시간이니만큼, 우리 공청회 두 주제가 있습니다. 공청회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농해수위가 제일 오기 힘든 데예요.

○위원장 어기구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청회 2건 있습니다. 시간 제약상 바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승제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진술인 성승제**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의뢰가 온 것은 아무래도 입법기술적 측면을 소개하라는 그런 것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성승제** 예.

축산법은 이미 아시다시피 각종 축산 축종들의 여러 가지 효과를 높이고 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우의 발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가령 70년대까지는 재래종 돼지가 전국 방방곡곡 가가호호마다 농가에서, 그러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한우는 오늘날 상당한 발전, 그런 역량을 비축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축산업은 현재로서는 근본적 지향점은 규모의 경제를 갖춤으로서 갈수록 고도화되는 환경 기준 같은 것들을 맞추고 주변 지역 농가들에 대한 피해를 불식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개별 법률에 대해서는 법기술적 평가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8페이지에 적은 내용입니다만 분법에 대해서는 법률이 국민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회의 제정법에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성상 수많은 법령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이 많은 법령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수범 기준을 인식하기 곤란해진다든가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은 조금 억제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 최상위 개념은 필요 없고 a번, b번 하위적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a번 수직적 체계정당성, b번 수평적 체계정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원칙적으로—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법률 통폐합 또는 분법의 최상위 원칙과 기준은 수범자인 국민들의 이익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9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만—법체계의 통일성 그리고 간결성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국민 전체인 수범자가 법률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체계가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성립이 된다면 법적 신뢰를 얻어 낼 수 있고 그러한 법적 신뢰는 입법집행의 경제성으로도 이어지고 많은 선순환 기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9페이지 아래쪽 문단의 분법 및 법률 통합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통합의 경우는 너무 다양한 법률들을 일목요연하게 통폐합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례로는 가령 2007년 7개 이상의 법률들을 통합하여서 자본시장법을 2008년에 시행한 케이스가 있고 분법의 경우는 상호관련성이 없거나 별로, 미약한 관련밖에 없는 것들을 같은 법률 내에서 규정하거나 해당 법률의 집행 권한과 책임 부담을 하는 기관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1개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 여러 집행기관들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 분법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령 분법의 사례로 10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상법전을 분할하여서 회사법, 보험법, 기타 여러 가지, 한 4개 이상의 법률로 분할했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입법, 분법이냐 통합법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은 그 법률에 의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서로 상이한 것들이 겹쳐져 있는가, 두 번째는 산업 진작과 업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점, 마지막으로 법체계 통일성을 어떠하게 판단해야 하는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점에 근거해서 법기술적인 측면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법률의 통폐합, 분법, 통합법 등 여러 가지 판단할 고려사항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석현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석현** 안녕하십니까? 이석현 변호사입니다.

한우산업특별법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전자산입니다. 현재 한우농가는 다방면의 극심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특별법으로서의 한우법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우산업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산물로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 이후 한우산업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 중요성으로 국내 축산업 총생산액은 25조 4000억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중 42.9% 규모입니다. 한우는 국내 축산업 생산액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호주 등과의 FTA로 인해 수입 쇠고기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2028년부터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이는 국내 한우산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첫 번째,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2022년 2분기 전체 한우농가 수는 8만 9258호였으나 약 20개월 만인 2024년 1분기 한우농가 수는 8만 2227호로 약 7000여 농가가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자급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30%대를 겨우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기존 축산법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축산법은 모든 축종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한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법의 한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포괄적 규정의 한계입니다. 축산법은 닭, 돼지, 소 등 다양한 축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다른 축종과는 달리 토종가축으로서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기존 축산법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개정의 복잡성입니다. 축산법은 이해관계가 얹힌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정 축종의 지원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2012년 이후 안정기준가격이 185만 원으로 지속적

으로 유지되었고 가임암소 두수는 110만 두 미만으로 그 요건 충족이 어려웠음에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사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한우법으로 이전해서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한우법안들은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안을 보면 제1조에서 탄소중립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한우산업의 수급 조절과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을 규정해서 수급 조절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5년 주기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산업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자급률 목표 설정을 통해서 한우 자급률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안을 보면 제10조에서 탄소저감 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사양기술 지원과 경축순환농업 전환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소규모 농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안을 보면 제17조에서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지원 및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23조에서는 한우산업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을 보면 제18조에서 품질 및 유통 개선을 통해 한우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관리 방안 마련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여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법은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달리 특정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먼저 유전자원 보호입니다. 한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한국의 고유 유전자원으로 특별법을 통해 명확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2조는 한우를 외래종과 구별되는 고유 유전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별법은 한우의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 수출 촉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기구 의원안 제20조에서는 한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가 지원의 실효성입니다. 특별법은 농업개선자금, 사료비 지원, 도축 장려금 지급 등 농가의 실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안

제14조에서는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입니다. 한우산업은 축산 전체 탄소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경축순환농업 전환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법이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급률 저하와 소규모 농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한우산업은 FTA 체결 이후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는 시장경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15조, 제17조에서는 자급률 목표 설정과 소규모 농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우산업 보호와 동시에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가치와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전자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100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축산업 생산물을 넘어 국가적 자산으로서 특별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우법은 단순한 법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우법은 단순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축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독립적인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한우의 브랜드 가치와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한우산업의 위기, 현황 또 기존 축산법의 한계 또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이유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상곤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전상곤입니다.

한우산업 성장률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1994년도의 우루과이라운드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됐고, 그다음에 쇠고기 시장에서 보면 2001년이 수입 쇠고기의 관세화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 개방된 해입니다. 이 두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94년도의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이후에 2001년까지 국내 한우산업 성장률을 명목치로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2.1%였고 국내 GDP 성장률이 9.6%로 잘 아시는 것처럼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축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01년도에 쇠고기 시장의 관세화에 의해서 완전 개방이 된 이후에 2021년까지 20년 동안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한우산업 성장률이 7.3%, 국내 GDP 성장률이 연평균 5.7%로 한우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성장을 유지해 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한우농가들의 여러 노력들 그리고 산학 관련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의 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 2022년도서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우 사육 두수가 좀 많아지면서 산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액이 좀 감소하는, 그래서 2021년도 이

후에 최근에 한우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그러한 공급 과잉에 따른 산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떤 소득 저조 문제 이런 것으로 좀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외 상황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국제 공급망이 불안정하다든지 국제 곡물가격의 문제라든지 환율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6년 이후에는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서 관세가 무관세화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산업적인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축산법에서 그러한 한우산업을 어떻게 지켜 내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검토를 한 것은 총 일곱 가지 법안을 2개로 나눠서 한번 봤습니다. 하나는 야당 쪽에서 제시하는 6개 안과 하나는 정부 여당에서 조경태 안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는 2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야당 쪽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한우법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죽 뽑아 보니 공통 조문이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법안에 따라서 어떤 법안에 있고 없고 그 내용이 네 가지로, 총 13개 안입니다. 총 13개 안을 죽 봤는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100%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열세 가지 안이 정부 여당과 조경태 의원안에 담겨 있는지를 한번 죽 비교를 해 봤습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다 읽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 간단히 목 차만 말씀을 드리면, 조경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3조와 4조의2에 신설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문제도 기존의 축산법 32조의4, 물론 여기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로 한우만이 아니라 모든 축종이 다 반영이, 포함하는 그러한 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축순환과 관련된 것도 제4조의2 2항에 신설 반영이 되었고,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수립 및 한우수급 전망에 대한 농가 제공에 대해서도 제4조의2 2항에 신설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원도 제31조의2에 신설 반영이 되었고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소규모 한우농가 대상 경영·기술·재무 컨설팅 그다음에 한우 거래규격, 품질표시 및 유통구조 개선, 한우 수출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모두 조경태 안을 보면 각각 해당하는 항목에 그러한 항목들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조문은 아닙니다만 따로 개별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한우자급률 그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그다음에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제한 그리고 한우 품평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조경태 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4조의2 2항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들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항목은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상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소규모농가를 보호하는 쪽의 법안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조의2 2항과 33조의4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우산업이 우리나라 농축산업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생산액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역에서 가지는 산업적인 여러 가지 중요도로 볼 때 지방과 도시 및 서울이 같이 공존하는 데에도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축산법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경태 의원안처럼 축산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우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안에 담겨야 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담겨 있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한우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면 한우산업 그리고 한우농가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농축산업에서 한우를 제외한 기타 다른 축산업이라든지 경종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 이 한우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하게 되면 다른 산업에 대한 유사 산업도, 아마 유사한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산업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후속 법안 상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한우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이 한우법 안에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조직 체계상 지금은 사실 한우 담당 사무관이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 분이 하기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의 문제도 법안의 문제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조직개편 문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이 더 형평성이 있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시간 잘 지켜 주셨고요.

야당 의원님들께서 낸 한우산업 관련 법안의 주요 조문들을, 공통 조문들을 뽑아서 조경태 의원님이 낸 축산법 개정안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면서 이 한우법 제정은 다른 축산하고 형평성 문제 등등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발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승현 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승현 반갑습니다.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의 정승현 원장입니다.

저는 한 50년 가까이 동물자원산업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정부의 정책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정년 퇴임하고 연구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진술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5개의 한우산업 지원 법률안과 두 가지의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 8월 26일 날 제417회 농해수위의 회의록을 제가 좀 봤더니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정희용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한우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좀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송미령 장관에게 얘기했더니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나 또 여기 농해수위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위원님들 모두가 이 뜻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다섯 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한우산업 지원 법률안에 대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에 이원택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한 법률안은 탄소중립의 어떤 중요성을 전제로 해서 한우산업의 전환과 지원을 제안하셨고, 어기구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지금 한우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어렵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독립적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어서 단일 안으로 통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문들을 살펴보면 한우산업의 민족문화적 측면에서 역사성 그리고 농촌경제의 주도적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어떤 시장의 무관세 개방에 대한 자급률이 하락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안보적 측면의 시급성 그리고 지금 자국이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는 환경 부담 강화에 대한 대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화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5개 법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가지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원택 의원님이 내 주신 것은 한우산업 지원 법률안과 연동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정부의 안을 반영한 게 조경태 의원님의 개정법률안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한우산업 지원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지금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만일에 한우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타 축종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축산법이 혼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금 불안한 감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재정적 부담이 더 강화됨으로 인해서 정부에 또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슷은 한데 한우산업 관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우산업 관련 단체에서 수용은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대 주요 축산업종, 소·돼지·닭·오리가 지금 전국의 4대 주요 축산업종인데 여기에 생산·수요의 시장기능, 과연 이걸 시의적 절하게 대응하며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생산자단체들은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검토가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축산법 개정법률안하고 한우산업 지원 법률안의 절충점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축산법 자체가 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해방 이후 혼란이라든지 6·25 사변으로 축산이 붕괴되면서 특히 가축 중에서

축우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던 가축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 1963년도에 축산법을 만들어서 지금 6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축개량·증식·사양에 관한 사항이 주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축산법이 우리나라 동물자원산업, 축산업 발전의 베풀목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은 맞지만 과연 지금 현재 축산법에서 그것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용량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축산법에서 소 등 13종 가축을, 대통령령에서 기리기 등 6종, 농림축산부 고시로 짐승 1종, 조류 15종, 곤충 16종, 기타 1종, 총 52종의 가축이 지금 현재 축산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화 상태가 돼서 법적 불완전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시대적인 환경 변화를 적정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률적 체계를 갖춰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술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축산법은 다양한 용도의 각종 가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칭 ‘지속가능한 동물자원 육성 및 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주요 축종인 소·돼지·닭·오리 등을 제외한 가축을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4대 주요 축종에 대해서는 축종의 고유성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독립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 아닐까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억제와 어떤 균형 있는 농촌경제 발전을 도모하기가 좀 어려워서 축산이 소멸되면서 지방 소멸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축산법 대체 법률안을 만들 때 축산농민기본권이라는 것을 넣어서 농촌에서 동물자원산업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립니다. 여기 담긴 내용들입니다.

우선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은 규제와 육성지원의 이율배반적 정책을 배제하기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우산업발전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탄소저감은 정부가 지금 국제적으로 이미 약속한 2030 탄소감축 40%와 2050 탄소 넷제로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우 수급조절 및 자급률 제고는 정부가 2027년 37%로 자급률 정책 목표를 수립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경영개선 지원은 이미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2026년부터 일단 미국산 쇠고기부터 무관세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여기 소규모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2013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한우농가의 70%가 50두 미만의 소규모농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업 자체는 농업소득의 전체적인 생산액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 그래서 결국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사회적 공익가치를 우리가 창출하고 있는 이 부분을 도와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폐업하

거나 사망 시까지 생존권 차원에서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빼놨는데요. 기업 한우산업 진출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우 산업 수급 조절과 안정화, 이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기업의 진출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걸 일방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우산업의 수급안정을 해치게 되면서 한우산업의 큰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한우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생산자단체와 협의가 필요하고, 만일에 한우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소규모 다양한 여러 농장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 통합적으로 각 분기마다 이거를 보호해서 기업형 한우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특별히 여기 마지막으로는 한우의 품질표시와 거래규격, 가격 형성시스템을 통해서 한우산업 생산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한 20년 동안 고급육이라고 그래서 마블링 중심의 이것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품질규격을 만들어 갈 시점이 지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원장님 진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충분했으면 더 많은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정승현 원장님께서는 우리 축산법이 62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과 성장의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러나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법을 '지속가능한 동물자원 육성 및 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축종인 소·돼지·닭 및 오리 등을 제외한 가축을 세분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축종은 각 축종의 고유성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독립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라는 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안용덕 축산정책국장 앞에 좀 나와 주세요.

시간 카운팅하지 마세요. 시작할 때부터……

제가 국정감사 때 축산물 이력제, 일명 가짜 한우 그 조치 그거 제기한 거 기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보고만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제가 부임……

○이병진 위원 저렇게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어요. 보고만 받았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400만 뷔 이상 본 그 짤이 돌았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조치 어떻게 했어요? 보고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제가 한 달 정도 됐고요, 위원님.

○이병진 위원 그러면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공부하고 나왔어야지요.

단속 강화한다고 한 게 전부더라고요. 81건 단속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저희가 관세청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이병진 위원** 그거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지요, 단속 처벌 강화 이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제도 개선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그거 이후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재발되고 재발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우법에 대한 근심은 가득해. 그래요, 안 그래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근심 없어요, 한우법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축산업 진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법안이 상정됐는데 100% 찬성했어요? 근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짜 한우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새로운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법안이 나오면 반대하거나 근심만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우 제정법에 대한 그 안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안도 지금……

○**이병진 위원** 제가 그래서 근심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전향적인,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법안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 현행 축산법은 농민과 소비자의 그 폭을, 폭넓게 그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 안만 내놓고 우리 의원들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근심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말이지요.

법률 전문가 이석현 변호사가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농식품부의 법률적 견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진술인 이석현**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눠서, 지금 기존 축산법은 일반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특별법으로 한우산업을 특별히 육성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규정해서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123조에 ‘국가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육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123조 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또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안을 갖고 논리를 주장하거나 펼치기 이전에 농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우리 찾아와 가지고 한우법 개정을 요청했겠습니까?

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농민을 위해서 고려한 원안 중에 하나만 대 보세요, 정부안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위원님들……

○**이병진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서설 길게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지요.

농민들을 위해서 고려한 조문 하나만 한번 대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축산업, 한우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병진 위원** 5개년 계획, 지금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 가지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농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의 조치가 근심만 하고 있고 진정 농민을 위한 대책 법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온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면피하지 말고 가짜 한우 퇴치 발본색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아마 네 분 진술인 나와 계시는데요. 이석현 변호사님, 진술인님, 한우를 1년에 몇 번 드시지요?

○**진술인 이석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습니다.

○**조경태 위원** 여기 와 하는 소리 들리시지요?

우리 정승현 원장님이십니까?

○**진술인 정승현** 예.

○**조경태 위원** 한우를 1년에 몇 번 드세요?

○**진술인 정승현** 거의 매일 먹습니다. 그 대신 한우사태를 사다가 먹습니다.

○**조경태 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와 하는가 하면, 아마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마 한우를 매일 드신다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진술인 정승현**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비싼 등심이나 안심이 아니라, 가장 국민들 소비가 안 되고 있는 한우사태가 지금 3000원입니다, 100g에.

○**조경태 위원** 그렇지요? 싼 거 드신다는 거지요?

○**진술인 정승현** 예, 그걸 탕을 끓여 가지고 매일 수프로 한 그릇씩 먹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우고기, 고기를 1년에 몇 번 드세요?

○**진술인 정승현** 아, 등심이요?

○**조경태 위원** 안심, 등심.

○**진술인 정승현**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도 많이 드시네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한우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발전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비싸 가지고.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한우가 과잉 생산됐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우가 많이 생산되는데 서민들은 한우를 먹을 수 없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 한 마리 있잖아요. 이게 2023년 아주 따끈한 데이터입니다. 소 한 마리를 농가에서 840만 원에 내놓아요, 840만 원. 여기에

보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한우 한 마리 저렇게 팔면은 한 25만 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비육우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사료값도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유통비용이 지금 932만 원입니다. 저기에서 333만 원 이익을 챙겨 갑니다, 이익을 챙겨 가고. 그래서 소비자는 소 한 마리를 무려 1770만 원에 사서 먹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축종별 유통마진율이 나와요. 저걸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달걀 같은 경우에는 유통마진율이 10%가 안 됩니다. 특히 달걀 같은 경우 0.2%, 오리는 마이너스 1.7%, 돼지 같은 경우는 5% 수준이거든요. 반면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약 20%의 마진을 가져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 가격은 유통마진에 의한 고질적인 병폐이고 문제이지 한우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통마진을 가지고, 이게 일종의 고리대금업자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폭리를 취하는 게 바로 유통마진 업자들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한우산업에, 한우농가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언 밭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의 가격 형성을 봤을 때 중간 유통에서 착취해 가는 이 유통마진율만 개선이 되면 상당히 나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333만 원의 유통마진 이익을 가져가거든요. 이것을 3분의 1씩만 나눈다면 한우농가도 흑자를 내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100만 원 더 싸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정부 관계자도 나와 계시지만 이 법을 통해서 한우농가에 지금 지원하자, 이것은 좀 너무 제 기준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유통마진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 행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석현 변호사님하고 정승현 원장님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이석현 예,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유통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한우산업법들은 유통보다도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우산업법에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그 유통 부분까지 한우산업법에 포함적으로 다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정승현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한우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러나 이거는 한우산업 농가가 의도적으로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건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유통 단계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생산자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예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차 파동이 1984년에 있었고 2차 파동이 1996년에 있었습니다. 3차 파동이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와 가지고 지금 4차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차·2차 파동

때까지는 정부가 약 25만 두 정도 소를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비축을 했어요. 하나의 변화된 게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한우고기의 소비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이나 지금 제가 먹는 것처럼 탕으로 불고기로 먹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구이 문화로 왔고 냉장 유통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 같이 한우 자체를 수매·비축할 수도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시장 속에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가격을 보면 평균 한우 가격이 거세수소가 1만 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1등급이 1만 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상태를 저는 4차 파동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한우산업 조정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만 관리를 하면 오히려 수입 소고기와 경쟁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구조를 혁신만 한다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과도한 한우산업 유통 마진 문제만 떼어 내서 정승현 원장님과 함께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지난 8월경에, 작년 8월경에 한우값 폭락 그다음에 쌀값 폭락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거리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우는 100대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전자산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한우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분의 진술에서도 또 이 한우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러 공감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석현 변호사님께서 앞서 진술하셨던 내용 중에 축산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이 법이 모든 축종을 포괄하고 있고 다양한 축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반법이다 보니 특히 문화유산인 이 한우를 집중 보호하고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런 법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과정에서 지금 호주산이든 미국산들이 마트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국산 한우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고 또 수입이 안 되니 한우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 계속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법 관련해서는 이후에 한우 자급률을 포함한 한우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 한우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논리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한우법을 전면 수용 거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현 변호사님께서 한우법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필요성을 역설하셨기 때문에 한우법이 아니라 축산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이 논리를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석현 제가 제출한 자료 뒤쪽에 정부 입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입장을 보면, 정부 입장을 보면 축산법에 이미 근거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문은 축산법을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에 대한 의견인데요.

한우산업법 취지를 봤을 때 축산법과 조항이 중복하여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주무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중복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법 제42조의13에서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의 경우에 돼지, 닭 등 전 축종 규제를 위한 조항으로 한우의 특성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제도를 담아내기에는 한 계가 있고 한우산업법에 규정된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법 42조의13과 한우산업법이 중복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우산업법에 규정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경우 축산법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규정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와 유사하다고 하고 있는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송아지안정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실제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중복된다는 규정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덕 위원 정부가 제대로 제출해야 되겠네요?

○진술인 이석현 예.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이 안 된다는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되겠네요?

○진술인 이석현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일단 나머지는 자료로 좀 보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승현 원장님께서 제기하셨던 것과 또 이석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축산법이 지금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래된 법이다 보니까 추세를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부처에서 검토를 하실 것인지 관련해서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생산자 단체하고도 상의를 해 왔고요. 축산법 개정안을 조경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 갖고, 이원택 의원님도 내 주시고요.

○전종덕 위원 이게 농림부에서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서 제출한 법안이 조경태 의원님 법안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조경태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께서 축산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도, 저희가 생산자 단체하고 관계 전문가하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안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어기구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순서 하실 때……

○전종덕 위원 이원택 의원님 안이 그 안이 아닌데요.

○이원택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번……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 말씀을 해서……

제가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사실인데 정부 측의 요구를 반영해서 발의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한우산업법의 어떤 대체용으로 발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축산 현안 차원에서, 필요하에서 발의한 거지 정부 측의 요구를 반영해서 발의한 게 아닌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을 섞어서 쓰셔서……

○위원장 어기구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다음,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입니다.

정승현 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3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기존의 축산법으로는 한계가 다다랐다. 그런 측면에서 한우산업 지원법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제정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농림부 관계자도 와 있으니 잘 들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승현 원장님께서 기존의 축산법이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과거에 가축 개량·증식과 사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지금 한우는 축산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추적인 산업으로 발전이 돼서 이 발전한 한우산업을 현재의 축산법으로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 또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52종의 가축을 다루는 포화 상태라는 거지요, 현재 축산법이.

그리고 이제는 가축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각 축종의 고유성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독립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다, 시대적인 요구에 농림부가 적절하게 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상곤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기존의 축산법 개정안, 아마 정부 청부입법 같은데 비교를 많이 해 주셨어요. 많이 담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축산농가들, 한우산업 농가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정부 축산법 개정안은 한우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지 않고요. 표를 보여 주시면 좋겠지만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관련된 조항이 축산법 개정안에 명시가 돼 있지만 막연한 구호성 규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다만 우리 한우산업 지원법에는 구체적으로 도축 출하장려금이랄지 농가의 구체적인 경영비용, 예를 들면 사료구매자금 지원이랄지 백신 예방접종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고 있고요. 또 경영개선자금,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정 축산법 안에는 한우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지 않아요. 단순히 축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상당히 선언적 규정만 돼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한우산업 지원법에는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 표시의 보급,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등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한우산업의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에 관한 조항도 한우산업 지원법에는 명시돼 있는데 축산법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우산업 지원법이……

이제는 농림부도 농민들의 요구 또 우리 한우농가들의 요구를 좀 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상곤 교수님께서는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전상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100% 공감합니다.

한우산업, 또 저도 학계에서 한 30년 가까이 한우산업을 그동안……

○**이원택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진술인 전상곤** 한우산업을 한 30년 가까이 경영·경제 쪽에서 연구를 해 온 입장에서 볼 때 한우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100%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이걸 축산법에 담을 거냐 한우법에 담을 거냐? 한우법이면 한우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동시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건 한우만의 문제만을 볼 거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1조 이상 생산액 되는 축산물만 따지면 한 6개 정도 되고 경종 쪽에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우산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담는 것이 과연 한우산업에 도움이 되는가? 이건 음양, 양과 음의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농가에 대한 보조를 크게 해 주는 것이 당연히 농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자생력이라고 그럴까요,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우법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결국 한우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법안에, 만약에 축산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저는 정말로 한우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만 현재 축산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우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됐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건 공청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만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박덕흠 위원** 성승제 연구위원님, 만약에 한우법이 제정된다면 타 축종 역시 이에 대

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축종별 개별법을 마련하면 행정·입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두 번째는 축산법을 기본법으로 축종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환경·위생·방역 관련 규제를 명시하고 축종별로 개별법을 뒤에서 지원 조항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 성승제 짧게 진술하겠습니다.

일단 법체계상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다 드린 바이기는 한데 7페이지에 제가 적었습니다만……

○위원장 어기구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고요.

○진술인 성승제 7페이지에 적었습니다만 한우는 혁혁한 성과를 거둔 분야인데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조경태 위원님께서 유통마진율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 있다. 뭐냐? 다른 축종과 달리 한우는 영세농가가 대부분이에요.

○박덕흠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건 행정·입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고…… 이게 질의시간이 짧아서요, 간단하게 좀……

○진술인 성승제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법안 체계상으로는, 제시된 개정안 대부분이 영세 농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박덕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전상곤 교수님, 한우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우는 출하 시까지 최소 24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닭 같은 것은 수십 번 또 돼지는 네다섯 번 이렇게 출하할 수 있잖아요. 출하 특성을 반영한 그런 개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축산법에 축종별 특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전상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법률에 담고 법률에 따른 조직체계나 이런 거를 볼 때 어떻게 한우법이 만들어지고 다른 축종이나 다른 경종 작물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특정한 산업의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느냐, 저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 준다라고 하면 모든 산업에 모든 특별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주어진 예산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인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법 개정안에 나온 열세네 가지 항목들이 현재 축산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할 때는 이 공청회의 취지인 것 같고 그러한 안들에 대한 내용이 비록 한우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축산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으니 한번 해 보고 이게 정말로……

○**박덕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용덕 국장님, 한우협회는 축산법 개정이 아니라 별도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협회에서 개정안의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축산법 개정안 통과 의지가 있다면 한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의 한우사육업 진입 제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골목상권, 대기업이 침해하는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은 대기업이 잘 길로 가야 맞다는 입장인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위원님, 한우협회에서 그렇게 주장하신 부분이 일단 조경태 의원안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거의 다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참여 제한 부분은 저희가 중소 규모 한우농가도 보호해야 되지만 축산업 진흥을 위해서 규모화 그런 것도 좀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 진입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결국 축산업이 대기업화돼 가지고 일반 소농 하시는 그런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정승현 원장님도 자료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축산업의,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소 축산인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축산업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자꾸만 키워갈 생각을 해야지, 키워서 그 사람들이 대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대기업만 자꾸만 하려고 이렇게 축산업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소규모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정부가 대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줘야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규모화하는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 놓고서 생각해야지요.

○**위원장 어기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박덕흠 위원님 의견 잘 유념해서 정책 잘 펴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소농 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문대림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성승제 선임연구위원님, 아까 위원님들이 제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영세농가 지원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영세농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진술인 성승제 이것도 다 말씀은 드린 내용이긴 한데……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성승제 7페이지에 적었다시피……

○문대림 위원 그리고요,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영세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영세농들은?

○진술인 성승제 시장…… 현재 농가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문대림 위원 시장논리에 맡겨 둬야 된다는 겁니까?

○진술인 성승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그리고 제도는 영세농도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관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법률 통폐합 또는 분법 등에 대해서 입법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수법자가, 국민 전체가 법률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법률의 구체적 적용은 전문가나 행정기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의 이해 부족이 문제가 돼서 개별 법률 제정이 가로막혔던 적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걸 여기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될 정도로 한우법이 일반 국민들이 용이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쓰일 정도라고 보여지십니까?

○진술인 성승제 실무상 지켜야 할, 보고해야 할 것들이 농가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가축법은 농가들이 이해하기가 쉽고요?

○진술인 성승제 그런 것이 규모를 키워 간 경우에는 용이하게 수법이 가능한데 현재 기준에서의 그런 시장을 그대로 보존할 경우……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법률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내용들까지 일반 농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논리다. 물론 법률 홍수 이런 지적들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앉은 한우농가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예견됐던 한우값 폭락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응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갑자기, 수법자가 법률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야,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사회적 합의와 농가의 요구가 진행되어 온 법안의 내용들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지요, 담당관님입니까? 국장님, 저희가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공전시킬 내용은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개별법으로 제정하느냐 현행법을 개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국회가 결정한 내에서 정부가 내용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거부권 카드를 꺼낸다면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개별법을 제정하느냐 특별법을 개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법체계의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공감은 합니다만……

○**문대림 위원** 공감합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문대림 위원** 법체계상 기존 축산법 개정이 타당하다? 내용적으로는 공감하는데 법체계상 기존 축산법 개정이 타당하다 이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의, 입법기관의 결정은 행정부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무시돼도 좋고,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라면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그런데 위원님, 진술인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문대림 위원** 진술인분들이 말씀하는 내용 중에 지금 두 분은 찬성이고 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한 분은 어쨌든 개별 제정법의 내용이 지금 현행 개정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법체계상의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1년 가까이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뭐고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책은 저희가 작년에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대림 위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는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농해수위에서 결정한 내용 그리고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안 해도 된다면서요.

○**위원장 어기구** 예, 안 해도 됩니다.

○**서삼석 위원** 하라고 할 때 해야지요.

함께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달에 전국의 1203명의 농민들을 상대로 농업인 의견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중 45.4%가 농가의 경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5년 연속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수농자재법·한우법에 대해서, 필수농자재법은 WTO 협정상 감축 대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고 또 한우법은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두 법을 제정한 것인데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우산업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산업이 취약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화된 반복된 문제가 장기화되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또 한우산업 같은 경우는 미래 예측이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우산업의 대책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래서 지속성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정부는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평계답지 않은 평계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명분도 설득도 빙약하고 국민적 저항을 언젠가는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진술인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파동의 연속성을 거론하셨는데 그 파동의 연속성이 지속이 되면 됐지 중단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파급·파동은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이 한우산업의 문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육 두수 증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없다. 어떻게 보면 생산, 유통, 가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저희 위원들이나 농가 입장에서 보면. 왜? 헌법 123조 4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도 아니고 가장 큰 상위법인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축산정책은 그 자체로도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한우산업법 반드시 오히려 정부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평계답지 않은 평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연계선상에서 한우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나열된 것 중에 사료를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 국산화율을 높일 것인가를 가지고 반전의 기회를 삼을 필요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곡물 수입하는 거 건초 수입하는 거 이런 것을 국내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8만ha 이상 쌀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고 주무 부서끼리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고, 안 했으면 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서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사료 확대 정책을 하고 있고요. 쌀 8만ha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식량국하고 실무적으로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제 사무실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위원장 어기구 오늘 공청회는 전국한우협회 회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진술 의견을 보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전상곤 교수님은 한돈도 큰 시장이고 또 닭도 있다. 다른 축종에서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고 각종 축종별 산업 지원법이 난립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했지요?

성승제 연구원님, 혹시 한우법을 이렇게 별도의 제정법으로 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진술인 성승제** 이미 검토를 하셨듯이 특별한 축종법……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먼저 검토하셔야 될 것은 법체계적 정합성이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한다면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성과를 보였는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약간 좀……

○**김선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석현 변호사께서 진술 의견을 냈습니다. 한우에 대하여 기준 축산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이석현**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한우법이 별도로 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지요?

○**진술인 이석현**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담당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축산법 개정안 외에 한우법 안에만 있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선교 위원** 축산법 개정안 외에 한우법 안에만 있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따로 있느냐고요? 따로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한우 제정법안 내용 말씀이신가요?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축산법 개정을 지금 정부에서는 강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김선교 위원** 한우법 안에만 있는, 한우법에 대해서 별도의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따로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그간의 간담회를 통해 담아낼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그게 일단은 의심스럽고 이를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더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추가적으로 축종별 단체 의견이 더 개진된 것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별도 법안 관련……

○**김선교 위원** 개진된 것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우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염려되는 게 다른 축종 단체에서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국민의 의견이, 특히 한우농가의 의견 또 다른 축종을 가지고 있는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 법에 하면…… 지금 한우농가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뭔지 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김선교 위원** 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김선교 위원** 또 거기에 대한 경영 지원을…… 지금 투플러스가 한 마리 키우는 데 얼마나 이익이 남습니까? 사로값 빼고 다 제외하고.

투플이 제일 좋은 소고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한 150만 원 정도 남지요? 원 풀은 그냥 보통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중장기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로 암소 감축, 송아지 암소를 줄이겠다 뭐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적정 사육두수……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김선교 위원** 그리고 그런 거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양곡관리법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쌀 생산,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평야 지대에 조사료 작물을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담아서 그 사람들 경영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갖고 획기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사료 관련해서 전략작물직불제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갖고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조사료 확대 정책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국장님, 축산정책국장으로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한 달여 됐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한 달?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공청회 오시려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한우협회 회원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한번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회장님 비롯해서 축협 조합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뒤에 앉으셔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이해당사자예요, 이해당사자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분들하고 그렇게 소통도 하시고, 공청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부가 지금

진짜 뭐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한우법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정부가 지금 완전 두 손 놓고 열중되어 하고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유념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오늘 좋은 질의들 많이 하시는데 유념해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방에 가서 설명도 좀 하시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한우협회 회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한우산업 지켜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필수농자재도 해야 되고……

간사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오전에 끝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장 어기구** 오전에 끝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이원택 위원** 여기 오전에 끝내고 쉬었다가 오후에 필수농자재 하는 게……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용 위원**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요.

○**위원장 어기구**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축산농가 또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요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셔서 못 살겠다. 좀 대책도 마련해 달라 지금 말씀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한우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업에서 한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가 되고요. 전체 축산농가의 80%가 한우농가입니다. 그리고 국내 축산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한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우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우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축산업과 우리 농촌 농가들이 무너지고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를 보니까 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축산법을 수정 보완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특별법으로 제정돼서 보호되고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상곤 교수님께 여러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일단 이 한우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목으로 법명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들을 주장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축산법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현 상황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부안이, 조경태 의원안이 마련된 건가요? 짧게 답변 주세요.

○**진술인 전상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기존의 축산법에는 없고요. 조경태 안에 보면 제4조의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2항에 4호 축산환경 개선, 7호 가축 분뇨의 처리……

○송옥주 위원 담아 있다고요?

○진술인 전상곤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FTA 관련된 부분들이 한우산업에 타격이 엄청 큰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전상곤 예.

○송옥주 위원 내년도 그렇고 2028년에도 이제 도래할 부분인데 이게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한우산업과 축산산업을 겨냥해서 이 법이, 이거와 관련된 대책이 축산법에 그러면 보완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진술인 전상곤 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이 한우농가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에 대한……

○송옥주 위원 축산농가 전반에 대한 거지요?

○진술인 전상곤 그렇지요.

○송옥주 위원 특정이 된 건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술인께서 발언하신 중에 축산업은 포화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도 지금 축산법에는 한우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축산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축산 관련 단체라든지 한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정부의 지원 정책이 빠져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현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농가 지원책은 뭐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이 법이 왜 진짜 특별법으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술인 정승현 아까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요성 그다음에 농촌 경제라든지 농촌의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수급 논리라든지 어떤 경제적 논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런데 굉장히 시급성을 지금 요하고 있다, 시급성. 그런데 이를 과연 축산법이라는 그 모든 가축이 담겨 있는 데다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그런 어떤 상황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한우산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석현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정부에서 계속 얘기한 게 특별법으로 하고 특이 품목만 이렇게 법으로 만드는 건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한우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업과 농촌 관련된 부분들, 축종 관련된 부분에서도 특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꼭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석현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이 형평성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축종 중에서 닭, 소, 돼지, 오리 중에서 한우만큼 브랜드화가 돼 있는 축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의 지금 경쟁력을 특별법을 통해서 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한우법을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취지가, 여러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취지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축산업을, 특히 한우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소규모 한우 축산농가의 혜택을 또 소득을 보장을 해 주자 하는 측면이 아주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상곤 교수님, 25페이지 발제문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우산업 성장이 7.3%, GDP보다 2% 이상 높았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한우법이라는 개별법이 없는 상태에서 축산법에 의해서 이 산업이 지탱되어 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장을 소규모 농가가 누렸느냐, 아니면 대부분의 한우농가나 아니면 유통·판매업자들이 이 호황을 누렸느냐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전상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우산업은 한 10년 주기의 파동이 있습니다. 언제가 파동이냐면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한 2, 3년 이후에 산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럴 때 보통 통계청에서 나오는 생산비 통계를 보면 비육과 번식 농가를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는데 번식 농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소규모 농가들이고 비육 농가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중규모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산업이 아까……

○서천호 위원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전상곤 4차 파동을 했는데 파동이 있을 때마다 가장 힘든 건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농가들이 점차 일관사육, 중대규모화, 규모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한 12년 동안 이 혜택을 소규모 농가는 크게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진술인 전상곤 파동 시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다, 그렇지만 산업의 활성화 시기에는 비육 농가……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든 규모가 큰 농가든 다 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발제문에 보면 최근에 우려하는 부분은 공급 과잉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급 과잉의 이유가 뭘니까?

○진술인 전상곤 공급 과잉은 사이클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 한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생후 한 6개월령 정도의 송아지서부터 비육이 한 2년 정도, 24개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거의 대부분이, 한 95% 이상이 거세우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시장에 출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건 너무 아는데 이 물량을 줄이려면 3년 전으로 회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생산 주기가 길고 또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생산 부분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 과잉이 왔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진술인 전상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천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법률로써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진술인 전상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법체계에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그게 한우법이든 축산법이든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법률에 담지 않고서는. 그런데 법률에……

○**서천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정책적 보완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부분과 법률로써 개별법으로, 법률로 강제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술인 전상곤** 제가 볼 때는 한우법이든 축산법이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는 거는 큰 차이가 없이…… 두 법 어디에도 정확하게 수급 안정에 대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적절한 생산이 되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또 주기가 긴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못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부분을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다 하는 부분과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우법 관련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이 한우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승현 원장님하고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진술인 전상곤** 그 내용이 수급조절협의회가, 이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다룰 거냐, 한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다룰 거냐, 축산이 한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수급 문제에 대한 조항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아니면 제삼자가, 누군가가 농가에게 ‘이마만큼만 키워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우법이든 축산법 개정안이든 그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개별법으로 지금 제정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려되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안 될 수 있다?

○**진술인 전상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급 안정에 대한 것들이 최근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한우법이든 축산법이든 수급 안정에 대한 법률적인 강제 사항이 저는 들어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시장경제에서 그러한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재산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허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천호 위원** 정승현 원장님, 마지막 간단히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정승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사실상 우리 지금 현재 한우 사육농가가 한 7만 9000 농가 정도, 8만 가까이 되거든요, 사육두수가 한 330만 두 정도 되고.

이 정도면 조금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농가에게 전달하면 우리

나라 농가들도 상당히 수준이 와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의 자발적인 시장 판단에 의해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번식이 이루어지면서 늘 이게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 강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적 관리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법률에 담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 정책 대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법적인 어떤 장치, 매뉴얼,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안용덕 축산정책관, 질의할 동안에 좀 거기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주셔서.

먼저 안 국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축산 전체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우리가 진작시키고 좀 진통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윤준병 위원 특히 한우의 경우에 2년 전인가요? 우리가 프랑스·아일랜드 위생수입조건?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수입위생조건.

○윤준병 위원 예, 수입위생조건 이걸 허용하면서 한우의 FTA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우가 꽤 부정적으로 영향을 맞고 있고 그걸 대체적으로 극복해 내려면 한우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한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좀 수용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윤준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한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부가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윤준병 위원 다만 입법적인 형식을 축산법에다 담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별도로 개별법으로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있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늘 진술인들 말씀도 들어 보면, 물론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법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견이 없다고 그러면 특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산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걸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려면 도와주기 쉬운 입법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축산법에다 넣고 운영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무거워서 쉽지 않지요? 그 하나를 개정하려고 하면 다른 축종 간의 영향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해서 문구 하나 바꾸려고 해도 개정하기에는 꽤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관리하는 데도 용이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제가 좀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 말로는 축산을 진홍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한쪽에서 진홍이 필요해서 지원하는데 ‘다른 쪽에서 거부감을 갖거나 불만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산 전체를 발전시키고 진홍을 시켜야 될 내용을 ‘한우 때문에 다른 거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니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은 다른 축종을 평계 대면서 지원을 오히려 못 하게 만드는 꼴이 돼서 전체적으로 축산에 대해서 하향 평준화를 자꾸 농정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가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성승제 진술인께서 법체계적 정합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입법 원칙으로서 제정의 불가피성 이 내용은 차치하고 법체계의 정당성이나 명확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나 이해 용이성 또 법률의 실용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가볍게 가는 게 훨씬 더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이렇게 해서 ‘이게 중복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산물 전체를 수급 조절하는 내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한우 수급 조절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모여서 결정하는 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게 용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통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자꾸 우기는 거 저는 이거 구시대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런 내용 정도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통합법이 옳으니 개별법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만이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석현 진술인께서 설명을 잘 해 놨어요, ‘사실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하고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있으면 그건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를 직접 키우시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상곤 교수님, 한우에 대한 정의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법안을 보면 ‘고유의 유전특성’, ‘순수혈통’, ‘외래종과 구분되는’이라는 용어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송옥주 의원님 안에 보면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라는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수정란이 젖소한테 이식이 되어서 생산되는 송아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만들 때 한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얘기를, 답변을,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전상곤 한우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에프원(F1), 교잡종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교잡종은 구분되는데 수정란을 젖소한테 이식해서 생산되는 경우에 얘를 그러면 종의 특성을 한우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우다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송옥주 의원님 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란이라 하더라도 한우 어미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한우다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먼저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이 법의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견해를 주신다면 어떤 견해가 맞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술인 전상곤 제가 볼 때는 아직 법적으로 그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한 정의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개인 의견을 주신다면요? 한우 어미……

○진술인 전상곤 그러니까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아직 그건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진술인 전상곤 아니, 그러니까 한우에 대한 정의 부분은 그렇게 나누는 게, 정확하게 나누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을 젖소에 이식해서 나오는 애는 한우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개념의 범주로 정확하게.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전상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한 정보를 결국 소비하는 주체, 그러니까 소비 주체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임미애 위원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진술인 전상곤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 원장님, 작년 말에 송미령 장관이 송아지 안정사업이 발동하면 가뜩이나 생산 두수가 늘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두수 감축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송아지 안정사업은 기준 요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발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법안에, 송아지 안정사업에 대한 내용이 법안으로 담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정승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생산농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도입된 게 과

거의 어떤 시장 불안정성, 파동이 오면서 급격하게 송아지를 격리시켜야 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안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기여가 안 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생산두수를 감축해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이유가 두수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당연히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정부는 그러면 송아지 안정사업 발동을 해야 되는데 발동을 안 한단 말입니다. 두수 감축에 농가가 협조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데 그러면 그 불필요한 제도를 굳이 법에 넣어야 하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진술인 정승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필요합니다.

○**임미애 위원** 필요한가요?

○**진술인 정승현** 그런데 문제는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시장이나 생산자 여건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국장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번식우 두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임미애 위원** 모르시지요?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임미애 위원** 한우협회 회장님 오셨는데, 기업농하고 한우농가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보십니까?

잠깐만 중단해 주시고요.

기업농과 한우농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지금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습니까?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예.

○**임미애 위원**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저희들은 한우 한 마리당 소득으로 보고 가족농이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앞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농은 몇 두 까지 할 것인가, 가족이 생계를 벌어먹을 수 있는 소득에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50두가 평균이다..... 이게 50두 키워 가지고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도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해서 4인 가족이 축산을 하면 가족농으로 봐 줘야 된다까지가 저희들 협회의 입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 기준?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승제 원장님, 내용 중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하면 도축산업에 관련한 제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나 법안이 집중되어 있어서 굳이 법이 아니어도 정책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새롭게 필요하느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의견 중에 도축산업과 관련해서 유통……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 중에, 사실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말씀 중에 유통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뒤집어서 보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생산사업과 다르게 또 다른 산업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축과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해서 먹고살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이미 산업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축산업·유통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도축세가 2011년도인가에 폐지되었는데요, 도축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성승제 일단은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위생과 기계적 일관 공정 시스템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만일에 그렇게 대량 그리고 위생을 확보한—개별 포장으로까지—그런 경우는 도축세…… 그 상황이 되어야 도축세가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사실 이 한우법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도 다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한우법으로 가축산법 안에 들어가냐 이것만 쟁점인데 사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우농가들의 생존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용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짧게 진술인들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승제 진술인, 이 한우법에 위헌이 있습니까? 위헌사항이 있습니까?

○진술인 성승제 위헌과는 거리가 멍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위법적인 것도 없지요?

○진술인 성승제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석현 진술인, 위헌·위법적 사항이 있습니까?

○진술인 이석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전상곤 진술인, 위헌·위법적 사항이 있습니까?

- 진술인 전상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원택 위원 정승현 진술인, 이게 위헌·위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 진술인 정승현 없습니다.
- 이원택 위원 없습니다.

입법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우리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했을 때 이 산업 분야를 어떻게 대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판단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위헌·위법적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문을 좁게 만들고 야박하게 하는가, 제조업 분야에 수많은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항공, 철도, AI, 수많은 법들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타 법과, 연관법과 충돌이냐, 거기에 대한 재원 투자가 박하게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분야의 재원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과 토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을 거부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만들었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 농업은 이렇게 야박하고 문을 좁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산업이라든가 타 품종과의 균형 문제 또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정부의 의지이고 운용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한우법으로 있느냐 축산법 안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어떤 품종의 산업을 키울 건가, 정부의 의지와 운용 능력의 문제이지 어떤 법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전상곤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술인 전상곤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오늘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한우산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입법의 권한은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 이원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저는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농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울 의지가 있는가, 우리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울 의지가 있는가인데 우리 정부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 중에 사실 정부가 이러이러한 품종들은 우리가 글로벌로 키워 가 보자, 수출산업까지 뚫어 가 보자 이런 육성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수급 조절하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뿐이 보이지 않거든요.

농업의 미래, 지금 우리가 K-컬처, K-푸드가 육성되고 수출의 활약을 맞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미래산업으로서 우리 농업에 전략적으로 어떤 품종을 어떻게 키울 건지, 그걸 특별하게 지원할 건지 이런 계획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패배의식에 근간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한우산업은 왜 특별법으로 가야 하느냐면요, 기후위기 속에서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이 없는 거지요.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1조 이상 생산되는 품목이 교수님 자료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리, 돼지, 한우 이렇게 있고, 경종에서도 1조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종을 보면 대개 탄소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하는 건 축산 쪽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구가 살기 위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특히 한우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와 더불어서 육성 계획을 조화롭게 가는 것이 저는 한우산업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님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기업의 참여 문제, 저는 기업의 참여는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의 참여는…… 규모화는 협동조합 형태로 규모화가 이루어져야지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규모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에서 미래산업으로 키울 만한, 한우산업을 키울 만한 것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승제 진술인부터.

○진술인 성승제 말씀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실은 한우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위원장 어기구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진술인 성승제 부담해야 할 요구사항, 요청되는 행정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규모의 경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체적인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이석현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크게 두 부분을 저는 크게 공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우산업, 특히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특별법을 만들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농축산업에 깔려 있는 패배의식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랜드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급화된 축산품으로 충분히 수출 가능성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탄소중립에 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탄소배출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축산업 중에서도 한우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담도 한우농가들이 가장 크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우농가들이 부담하게 되는 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전상곤 한우가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 그다음에 농촌 공간에서 차지하는 생산액이나 부가가치나 종사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우산업이 보전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을 축산법이냐 한우법이냐의 취사선택의 문제로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 둘 중의 하나 양단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한우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 정부조직의 개편하고도 저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후속 작업에 대한 것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정승현 기본적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우산업에 대해서 늘 얘기하면 한우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설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소득도 높아졌고 작년에도 지금 보면 1인당 14.7kg의 소고기를 먹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를 먹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급률이 35% 내외인데 우리나라 시장만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우시장을 잘만 관리를 해 주면 생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육성이 아니고 어떤 시장과 연동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연계시킬 수가 있고 결국은 한우 소고기에 대한 자급률 향상하고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새로운 한우산업의 생태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친구가 있는데 중국 친구가 우리 한우 소고기가 정말 세계에서 최고 맛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잘될 것 같은데 왜 중국으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원장님 아십니까? 왜 못 합니까, 우리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중국에서 큰 소비시장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 소고기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정승현 중국의 수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소비시장도 존재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잘 안 한 겁니다. 일본이 와규 자체를 지금 수출을 우리보다도 몇십 배를 더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진술인 정승현 일본이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FTA를 했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그들은 와규의 안정화를 했습니다, 생산 규모의 안정화. 그래서 늘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수출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와규에 대한, 지금 화우에 대한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패배주의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인 한우산업에 대한 생산 육성 정책을 갖고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출도 가능하다.

다음에 정희용 간사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임미애 위원 임호선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오셨어요?

○임호선 위원 예.

그냥 간사님 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간사님 먼저……

○정희용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먼저 하시기로…… 양보하셨습니다.

○임호선 위원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두 분 진술인 말씀밖에 못 들어서…… 성승제 위원님, 이석현 진술인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우선 진술인들 말씀 다 듣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축산업에서 한우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조사해 보니까 24% 되더라고요. 축산업 전체 25조인데 한우가 6조 정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전체 축산농가의 80%가 한우농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축종 간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석현 진술인 말씀하시는 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보십니까, 이석현 진술인님?

○진술인 이석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이석현 예.

○임호선 위원 23년도에 전국대학교가 수행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6년도 미국산, 28년도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될 경우에 수입물량이 10%, 20%, 30%가 증가하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가 각각 6170억, 7531억, 8858억이 감소하는 걸로 계측을 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50%였던 우리 한우 비중이 37%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완전 시장 개방이 됐을 경우에 국내 한우시장이 과연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한우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석현 진술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석현 그 관련해서도 지금 한우산업이 FTA 체결 이후에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경쟁력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송옥주 의원안에서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과 함께 한우 자급률 확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 의원안에서도 한우의 자급률 확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통해서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위원** 농식품부 의견도 들을 수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

○**임호선 위원**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임호선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진술인님 발언 들으면서 이 축종 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타 축종 쪽에서도 이렇게 특별법 제정 요구라든지 또는 저희가 어떤……

○**임호선 위원** 시간 때문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방에 바로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26년도 미국산, 28년도 호주산. 그리고 앞서 제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한우농가가 사실상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는 거고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관세율이 10년 전보다 76.9%가 인하됐어요. 그런데 수입량이 똑같이 76.5%가 증가를 합니다. 이 관세율이 바로 소고기 수입량하고 비례관계에 있는 게 통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산·호주산 쇠고기 수입 관세가 모두 폐지될 경우에 사실상 우리 한우농가가 직면하게 될 이 위기 상황은 한우산업 지원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육성에 지금 나서지 않으면,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올 때까지 송아지에서 6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야만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특별법, 우리 한우산업 지원법을 만들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위원님, 관세율 제로 되는 것은 이미 FTA 체결될 때부터 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한우업 단체하고 관련 대책 수립해서 지금까지 대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어찌 됐든 한우 시장하고 수입육 시장하고는 좀 차별화돼 있고 저희가 또 한우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안용덕 예.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간사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희용 위원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장시간이어 가지고 약속이 있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또 한우협회 회장님과 각 시도 회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도 얼마나 바라시는지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저도……

저는 한우법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한우법이 조금 더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하고 같이 둘둘 말아 가지고—표현이 좀 이상한가요?—다 같이 다루면서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조정위원회도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해 버리고, 이번에 양곡관리법 하듯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 행사의 사유가 이런 축종 간의 형평성 문제, 축종별로 산업지원법 난립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에 의해서 일방 처리되었다, 이 점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회의 시작할 때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신문에 났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 ‘어떤 일도 타협하지 못하는 두 정당이 한국 위기의 뿌리이다’ 이런 외국인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타협하고……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정부가 있다고 해서 정부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피해 보는 건 누구입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이고 한우법에 있어서는 우리 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때로는 생존권을 걸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한우를 키우는데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한우협회 회장님들의 뜻 또 한우를 키우고 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염원도 반드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림부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호법 이야기가 있을 때 의료법 안에 간호법을 넣어 놓고 다 할 수 있다, 간호법을 빼면 다른 의료 직역에서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법을 못 한다 했지만 정부에서 간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의 또 간호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켰지 않습니까? 저도 한우법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축종들도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합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자리를 좀 늘려야 되는 문제, 이게 그동안에 해 오던 것과 달라지기 때문에 내부 업무 분장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한우협회 회장님들도. 모든 축종이 축산법으로 두루뭉술하게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래서 축산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외국 소에 대비해서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우법 필요하다, 저도 우리 지역 한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한 번에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회장님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점 만점 안 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우리 농가들도 같이 협의해서 80점짜리, 90점짜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100점짜리 만들려고 하다가 또 도돌이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간사님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박수)

정희용 간사님 얘기 들어 보니까 한우법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쇠고기 수입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되고 대한민국의 100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한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 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제, 토론, 위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직권으로 민경천 한우협회 회장님 오셨는데 오늘 공청회 본 소감 또 우리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간단히 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농해수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 해야 될 입법의 하나지 않느냐, 한우법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여야에 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목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서, 지금 보면 우리 도지회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참 어떻게 보면 역사는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고생해 줬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내용적으로는 그냥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문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과정에 참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성승제 선임연구위원님, 이석현 변호사님, 전상곤 교수님, 정승현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공청회를 잠시 중지하고 15시에 공청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은 진술서만 서면으로 제출하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공청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 방식은 오전과 같이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들의 진술 요지, 관련 법률안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강정현 반갑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서세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서세욱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라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정충식 반갑습니다.

(인사)

○위원장 어기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정부 관계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실시하고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정현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정현 고맙습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삶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농업인의 현실은 한마디로 어디 하나 편안하게 빌붙일 만한 여유가 없는, 비칠 언덕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삶은 해가 바뀌면 올해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라도 하게 되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올해는 어떨까, 작년 수준은 돼야 할 텐데'라는 매년 시작되는 그 해가 오히려 가장 최악의 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작년 2024년은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강도의 증가, 농촌 소멸 위기의 현실화,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한 물가 잡기 희생양이 된 농산물 그다음에 수확기 산지 쌀값 문제, 정체되어 있는 농가소득과 늘어나고 있는 농가 부채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 위험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더 커진 불확실성 탓에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비롯해 농사용 전기 및 비료값 등 치솟는 농가 경영비 등은 해를 넘어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러하기에 2025년도 한 해 역시 기회보다는 위험요소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면 소득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농업소득은 평년작 이상으로 생산량이 유지되면서 가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조금만 가격 상승이 존재하면 소비자물가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저율 관세할당 수입물량을 통해 시장가격을 낮춰 고스란히 피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고 가중시키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가 경영비 등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니 농업인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 안정 보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농업의 현장입니다.

그간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저율관세 수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닌 바나나 등 수입업자가 얻는 결과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요. 할당관세 세수 지원액을 보면 2020년에 3742억 원에서 2023년 추정액이 1조 759억 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으로 농가에게 지원했더라면 더욱더 농가의 삶이 개선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농업의 불안정성은 통계로 보면 그 현실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감소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4년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시대를 열었으나 2023년의 농업소득도 결국에는 1114만 원 수준입니다. 30년이 변한 세월 속에 농업소득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농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도 2022년 전년 대비 27.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소비료 가격, 나머지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에 비해 3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를 살펴봐도 그 인상폭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농가경제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농가 부채 부분

입니다. 2023년도 농가 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지역에서 한 자리 이상 부채가 증가하면 바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 이상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농가 부채에 대한 관심도,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농가 경영비의 농가 수입 대비로 보면 2010년도에 농가 수입 대비 농가 경영비가 53.6%였는데요, 22년 기준으로 72.6%입니다. 전업농 기준으로 1억 매출을 해 봤자 수익으로는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본인의 인건비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농가 경영비의 현실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료, 농약 등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업이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으나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한계가 있는 만큼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지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매번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다는 법률이 실상 재정적인 문제로 좌초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는 농업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며 농업의 미래는 국민의 안정적 미래를 여는 기초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위기는 해를 거듭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예산 증액은 미래에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열어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욱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요. 시간상 줄여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현재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입니다. 앞서 다양한 고민의 문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에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살리는 데는 적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줄 대상이 없는 농업·농촌 미래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적기에 이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업 경영을 살려 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강정현 사무총장님께서 현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서세욱 서세욱입니다.

최근에 비료·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 제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 그러니까 농업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는 제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하고 속성별, 즉 영농 형태별, 경영주 연령별, 경지 규모별로 봤을 때는 차이가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소득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49쪽을 보시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런데 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별로 봤을 때 각각의 속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질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 농업소득 같은 경우는 실질농업소득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림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소득은 속성별로 굉장히 큰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농 형태별로 봤을 때는 축산이 농가소득이 가장 높고요. 그렇지만 일반 밭작물 같은 경우는 농가소득이 2312만 원에 지나지 않아서 평균 농가소득의 65%에 지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50대가 가장 많고, 이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1.5배에 해당하고요.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424만 원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평균소득의 68%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지 규모로 봤을 때는 당연히 대농의 농가소득이 크고요. 소농일 경우에는 굉장히 작아서 0.5ha 미만 계층 같은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평균으로 보게 되면 87%에 지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속성별로 봤을 때 농가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 2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영농 형태별로 봤을 때 축산이 당연히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논벼 같은 경우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에는 70세 이상이 28%,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 규모별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농일수록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사실이지만 소농일 경우에는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업소득의 추이를 보게 되면 기복이 매우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게 54쪽의 그림 6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성별로 봤을 때 안에 있는 구성 요인으로 봤을 때도 그 기복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그림 6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농 형태별로 봤을 때 축산하고 화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연령별로 봤을 때는 60대 계층의 농업소득 기복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이 반복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농업경영비, 사료비의 급등으로 인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값입니다. 농업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과 농산물 판매량 그리고 농업경영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가격뿐만 아니라 투입량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5쪽을 보시게 되면, 가격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농가판매가격지수 추이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럼 7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다만 4~5년 간격으로 해서 계속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산지 쌀값이 4~5년 주기로 계속해서 등락을 하고 있고 더더욱이 채소·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비료·사료 가격 그리고 노동임금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류의 가격 등락을 살펴본 것이 56쪽의 그림 8부터 시작해서 그림 13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과 재배면적의 등락에 따라서, 즉 가격이 전기에 오르게 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이 가을이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이러한 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농업경영비라고 하는 것도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57쪽에 보시면 표 4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업경영비 전체에서 각각의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겁니다. 비료비를 보게 되면 거의 6%, 사료비가 요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광열비가 7% 전후 그리고 위탁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감가상각비하고 판매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경영비라고 하는 것도 속성별로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본 것이 58쪽의 그림 14를 보시게 되면 속성별로 봤을 때 농업경영비의 평균, 굵은 선이 평균이고요. 그 속성별 요인들을 보게 되면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속성별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기복이 매우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 양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농업경영비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격 또는 비용을 완화하는 대책보다는 경영소득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비 지원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지출사업과 조세지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지출사업으로 보게 되면, 24년 예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388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사료비가 9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세지출로 보시게 되면, 6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재 영세율 그리고 면세유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자재 영세율 같은 경우는 25년 기준으로 해서 2조 3500억에 달하고 면세유 같은 경우는 25년 기준으로 해서 8700억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WTO 농업협정에서 보면 감축 대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총량이, 61쪽이 되겠습니다만, 1조 49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동 위원회에서 낸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정안별로 재정소요 추계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2조 8000억에서 9조 6000억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감축 대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총량이 1조 4900억이라고 하는 것을 별씨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정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교수님께서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로 잘 분석해 주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충식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충식 감사합니다.

영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농자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라북도 조례 제정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한 18년간을 보면 광열비, 비료비, 종묘비, 농약비 순으로 해서 증가율이 계속 높았습니다. 실제로 농산물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농업생산비와 판매가격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생산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농자재들은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수입할 때 외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안 좋아지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2021년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가 일어난 것을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어떤 농자재 하나가 모든 국민들, 농민들 근심을 만드는 그런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가 판매가격 및 구입가격 지수의 변화입니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자재 비용과 밀접합니다. 2022년도 보면 전년 대비 12.7% 상승, 재료비, 경비, 가계용품 등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물가는 최소 2~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정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0년간 농업소득은 거의 제자리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농민들이 지정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국가나 큰손들이 농산물 가격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경쟁력 요구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표들이 계속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소득 하락을 보시면 2018년에 1292만 원, 2022년

984만 5000원으로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그 대신 농자재비는 폭등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표로 보시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사 좀 계속 지어 보자, 농사짓게 도와 달라고 한 것이 전라북도 조례 제정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농사짓자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기질비료 차액 보조, 시설 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등 한계가 분명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북도연맹과 그리고 도의회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요. 2023년 10월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12월에 의결이 되었고 12월 29일 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을 위한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논의와 갈등 속에서 1년간 TF팀이 운영됐었고요. 결국은 면세유, 농업용 전기, 비료, 사료 4개 품목을 지원 품목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발동 기준이라든가 지원 물량,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행정과 이견이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북도지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한 내용도 역시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안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가책임 상향을 통해 영농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농업예산이라든가 전반적 예산을 줄이고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어떤 지원의 편차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소리가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농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각 도별로 지원 방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농가와 영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농자재법을 제정을 해서 국가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자재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은 농가 경영 위협의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필수농자재 지원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물으시면 지금 현재 농촌이 소멸화되고 있고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의 65%가 60대, 65세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제도적 어떤 상황 개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국방 그리고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수조, 수십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대표적인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대한 보조는 왜 그렇게 야박하고 왜 그렇게 엄정합니까, 바늘 촉처럼?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것은, 지속가능한 농촌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고구마나 떡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 마련, 제도, 환경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농촌이 매우 힘들다, 농업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라북도 조례 제정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임호선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임호선 위원 잠깐만요.

윤원습 국장님 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호선 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호선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토론문 갖고 계시지요? 이것 자료 없으십니까?

68쪽 한번 봐 주세요.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연간 407만 원, EU·미국·일본, 일본이 1200만 원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서세욱 교수님 발표 자료 60쪽 봐 주세요. 60쪽 보면 농업협정상 보조금 총액(AMS)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으로 68쪽 자료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반에도 못 미치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꼭 좀 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호선 위원 잠깐 앉아 계세요. 거기에 서 계시고요.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지요?

○위원장 어기구 예, 그럼요.

○임호선 위원 지금 자료 요구한 거거든요. 시간 좀 다시……

○위원장 어기구 예, 시간을 다시……

○임호선 위원 아니아니, 이것은 진짜 자료 요구……

○위원장 어기구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5분 다시 넣어 주세요.

○임호선 위원 서세욱 교수님, 여기 AMS, 연간 보조금 총량이 1조 49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연간이지요?

○진술인 서세욱 연간입니다.

○임호선 위원 연간이지요?

○진술인 서세욱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님들 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5년간 추계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재정 소요액 추계 낸 게 문대림 의원님 같은 안은 3조, 존경하는 전종덕 의원님 안도 3조,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안이 6조 또 최고로 많은 게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안이 9조 그렇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이 보조금 총량, 물론 꼭 이것만, 하나만 항목으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총액을 그렇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또한 제정안별로 지원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재정이 소요돼서 다른 사업 재원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정부에 어떤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든지 하는 지적은 다소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정부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빠졌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호선 위원 85만t인 경우에 한 1060억 들어가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한 품도 반영 안 시켰습니다. 시설농가의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예산 빠졌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빠졌습니다.

○임호선 위원 또 농사용 전기료 차액 보조 예산 빠졌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호선 위원 이렇게 농업에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이게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불필요하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반론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래서……

○임호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농자재 이렇게 별도의 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하는 것들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이 법이 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기제를 갖추는 거거든요, 법적 기제를. 그것이 필수농자재법의 제정 취지 아니겠습니까?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려운 농업, 농민들을 돋기 위한 법이니만큼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것을 법으로 기제, 이 작동 체계를 고정화시켜 놓는 것 자체가 저희는 조금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비료 원료라든지 요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했을 때 저희가 보충적으로 저희 정부 재정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

○임호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의 지원 근거를 이렇게 필수농자재를 정해서 정부가 오히려 이 법에 근거해서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농업·농촌을 생각하신다면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이 법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이번 금년에 갑자기 요소 가격이 또 급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또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요. 법을 제정한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법은 있는데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 일단 저희가 기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또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호선 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 장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법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발표해 주신 세 분께서 전부 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고 여러 가지 통계적 수치도 발표를 해 주시고 해서 다들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림부 관계자께서도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한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농림부가 그런 지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지요. 이게 기재부하고 재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농림부가 힘에 부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랄지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이 랄지 농사용 전기료 차액 보조 예산이 아예 농림부 정부안에 조차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거지요. 일부라도 반영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좀 더 증액을 한달지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예 농림부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농림부는 물론 기재부에다 올렸겠지만 기재부를 설득을 못 했든지 힘이 달렸든지 어찌 됐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필수농자재법 제정을 통해서 더 기재부를 압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관련해서 농림부가 지원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고, 강정현 진술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필수농자재법 제정 마련에 대한 반대는 결국 재정 부담을 최대한 안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치는데 강정현 진술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진술하는 중간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다라는 면 세유 보조도 그렇고 농사용 전기 보조도 그렇고 실제로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1995년도에 WTO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원하지 않았지만 농업 쪽의 피해가 감수되면서 개방화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 그다음에 면세유 보조도 해 주고 있는 건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치 이것이 농민들을 위한 그냥 막연한 지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실제적으로는 30년 전에 우리는 국가적 약속을 받았고 이미 매년 1조 원씩을 상생협력기금을 무역공유이득 제의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도 했으나 그것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회 안에서도 이행의 어떤 약속들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필수농자재 지원의 어떤 범위라는 것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금주 위원 알겠습니다.

정충식 사무처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북에서도 조례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데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의 제정안은 농식품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서 지원 조건이나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조례로 네 가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술인 정충식 예,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일부 기자재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원 기준이나 지원 조건들 결정을 하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충식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면세유하고 농업용 전기, 비료, 사료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먼저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쓰인 것을 보면 면세유라든가 그리고 가격 상승분에 대한 페센트를 아무리 많이 합쳐도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담당한 예산이 1000억 단위 그런 단위가 아니고요. 면세유 같은 경우는 약 18억 정도가 상승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무기질비료 같은 이런 건 별도로 또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항상 하는 말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공포감을 농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먼저 심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흐름들을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넣는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우리나라 예산에서, 물론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 안의 예산이다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금주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우리 정부의 추진 의지 또 농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제정 취지는 공감한다라고 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보다는 사실 사안별로 대응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쨌든 공급망 위기·고환율 위기 이게 지금 현실화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발제자들께서도 얘기했는데 23년도 농가 평균 비료 지출비가 23%, 사료비 지출액이 15%, 광열비 34%,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광열비는 60%, 사료비는 216% 폭등하는 이와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25년 예산에는 반영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의 말도 신뢰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 예산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도화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농가 소득 추이가 이제 1000만 원대 박스권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니까? 결국 투입제, 경영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축 중의 하나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필수 농자재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정책적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철학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서 교수님이십니까?

○**진술인 서세욱** 예.

○**문대림 위원** AMS와 관련해서 이게 수정된 예가 있습니까?

○**진술인 서세욱**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 1조 4900에서 계속……

○**문대림 위원** 수정된 예가 있습니까?

○**진술인 서세욱**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대림 위원** 없습니까? 아니, 오래전부터는 수정된 예가 있습니까?

○**진술인 서세욱** 그거는 WTO 협정했을 당시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해 수정이 되긴 하지만 그 범위, 아까 말씀드린 1조 4900……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조 4900억이지요.

총량을 위반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진술인 서세욱**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지요?

○**진술인 서세욱** 그때 뭐냐 하면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했을 때 쌀값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문대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AMS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전국적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내용이 운동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경영비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국가 책임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논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AMS 총액 부분하고 아까 정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무슨 법이지요? 그 두 가지 근거인데. 그중에 한 가지 축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AMS 총액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한번 저희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 WTO 상소 기능이 의미 없어졌다. 상실된 지 오래다, 97년 이후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AMS 총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문제됐던 적이 없다. 소고기 관련해서 약간 분쟁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우리나라가 문제 없음으로 수습이 된 상태다.

더욱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WTO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80년간 유지해 온 이런 다자간 무역체제가 통째로 혼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농정 당국이 또는 농업 관련 학자들이 WTO 규정을 얘기하면서 마치 통상 관료적인 소극적인 자세로서 우리 농민들을 옥죄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업 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농업재해, 필수농자재, 경유비 상승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값 인상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감당 못 하면 농사짓지 말아라 하게 되면 이건 정책이 아니지요. 이제 좀 정책적 기조, 철학적 기조를 좀 바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진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문대림 위원님……

○**진술인 서세욱** 간단히……

○**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서세욱** 아까 AMS 문제를 임호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농자재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플러스알파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조 4900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조 상한인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우려가 있다고 하

는 부분이고요.

○문대림 위원 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3년 사이에 AMS 총액을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진술인, 한번 관심 있게 봐 봤었습니까?

○진술인 서세욱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문대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WTO 규정을 얘기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삼고 있다.

○진술인 서세욱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하실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대외 개방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외 개방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WTO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나라같이 무역 소국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대림 위원 무역 소국이든 대국이든 WTO 상소 기능이 작동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 4, 5년 사이에? 단 한 번도 작동한 적 없는 상소 기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겁먹어 가지고 건건마다 WTO, WTO 하시게 되면 저희 농민들은 어떻게 버팁니까?

○진술인 서세욱 예.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WTO에 대해서?

○진술인 서세욱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없어요?

아니, WTO 관련해서 트럼프가 한마디도 대선 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자 무역주의 이런 걸 반대하고 다 이제 독고다이로 개인 대 개인으로 붙어 가지고 하자는 건데 너무 이렇게 WTO에 매몰돼서 이런 정책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정충식 처장님!

○진술인 정충식 예, 저요?

○서천호 위원 예. 조례 제정에 참여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정충식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 또 하신 거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이 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어업비는 뺏겼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갈등도 표출됐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이견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진술인 정충식 처음에는 대상 품목을 제한한 거고요.

○서천호 위원 품목이 지금 네 개 지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진술인 정충식 처음에는 우리가 여덟 가지 정도를 좀 더 넓게 했고요.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를 줄이는 과정이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지원 대상 금액까지 행정에서 예산이 아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그런……

일단 그걸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행정에서 깔고 시작하면 논의의 진척이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다 합치면 예산 문제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정충식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진술인 정충식 저는 좀 크게 봐서 우리나라 농업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한 2.7%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천호 위원 국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진술인 정충식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방정부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얼마까지 높아야 되느냐 그러면 4% 까지 높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정충식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 국장님, 지금 제정법하고 기존 법제하고의 큰 차이는 뭐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천호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거기서는 일단 저희 필요한 경우에 가격의 급격한 상승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이 필수농자재법의 제정안을 보면 구체적인 보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지출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분야의 자연재해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또 환경이.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법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안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그 경영체법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있는 농어업경영체법의 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게 규정을 보완한다고 해서 뭐 재량으로 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서천호 위원 정책적으로 이게 보완을 하겠다 그랬는데 국가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법 제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 부분은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이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무…… 뭐 물론 의무지출 구조로 지금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산상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스럽다 하는 부분이시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정충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년에도 농사짓자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서 시작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저는 가슴에 와닿고 좀 먹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깨닫고 전국 최초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상황이나 농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짧게 정충식 사무처장께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진술인 정충식** 여기 전라북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라북도는 일반적으로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라북도 전체 소득의 농업이 차지하는 부위가 한 15%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지금 현재 농업소득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그리고 농촌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기댈 언덕은 행정이고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농촌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노력 안 하고 살기 힘들다고 농사 안 지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생산량을 줄여 온적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원인이 있다, 농민들이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필수농자재라든가 기원은 어떤 생산비가 상승되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제기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이제는 답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제가 오전에도 한우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청회를 했고요. 지금 오후 시간에는 필수농자재법과 관련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농식품부의 의견은 이 부처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오전에 한우법 관련된 부분도 심지어는 참석하신 국장님께서 현안이나 법안에 대한 분석이나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셨고요. 현재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법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다시 한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장님께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말씀하셨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78페이지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충남·경남·전북·전남·제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의 어려움, 그렇지요? 농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쳐장님?

○진술인 정충식 예, 동의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진술인 정충식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국가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쳐장님께서는, 여기 농림부의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현장에는 없지만 이 방송에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차관이나 고위직도 이걸 보고 계실 텐데 또 보고를 할 텐데 이 부분을 농림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법을 특별법으로 꼭 제정해야 된다, 개별법으로 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솔직하면서도 절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정충식 우리가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하고 건강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농민이 쉽게 말해서 전략자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민이 없고 농업이 없으면 우리나라, 기본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토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기후위기 말씀하셨고,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재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상시화되고 있고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매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면 그런 불안정한 농업 환경이 지속되면 결국은 농산품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농사를 못 짓겠다 그러면 생산 물량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갈 건데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외부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에서는 낙관적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미래세대의 먹거리 장담 못 하는 경우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임박할 그런 농업의 위기에 대해서 사실은 관계부처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정부 차원의 의견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이 법과 관련돼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서세욱 교수님,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롯값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 24년까지 정부는 비료·사료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대내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원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정법을 마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

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진술인 서세욱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예산의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예산이요?

○진술인 서세욱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한다면?

○진술인 서세욱 그게 가장 크겠지요.

○박덕흠 위원 예산이요?

○진술인 서세욱 예.

○박덕흠 위원 어쨌든 상승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생기나요? 그런데 이제 고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

○진술인 서세욱 아까도 농식품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의무지출이 됐을 경우에는, 의무지출이 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재정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박덕흠 위원 또 한편으로는 농민들은 마음을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진술인 서세욱 아무래도 수혜자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안심은 되겠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요새 기후환경도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 앞으로 농사짓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한편으로 정부에서도 사실 농민들이 좀 마음 두고 농사를 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6건 법안 보면 연간 적계는 5000억에서 1조 9000억까지 이렇게 예측이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에서 지금 농림부 예산이 한 18조 원 되는가요, 국장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증액을 해서 받아 와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저는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재부나 이쪽에서 이 18조 예산 외에 플러스알파를 만들어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잖아요, 서 교수님?

○진술인 서세욱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세입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박덕흠 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결국 농자재 가격의 폭등 시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사실은 도움은 많이 되지요? 되고, 지원이 계속된다면 한편으로는 또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요, 국장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도 농기계 반값 이렇게 지원한 적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때 물론 농기계가 많이 보급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농가 부채가 굉장히 급증하고 일부 농기계만 수혜를 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농기계 이렇게 사는 것을 해 주면 농기계 하는 회사들만 이익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현금으로 살 때하고 또 정부에서 사 주는 가격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직접 농민들한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필수농자재법의 문제, 우려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계속 농가들한테 보조,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유인이 적어질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가에서. 그런데 결국은 법제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면 한 번은 다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잘 정책을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들어가지 말고 윤 국장님 거기 서 계세요.

재정정책과이니까 정책적인 내용 전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농식품부가 생각할 때 농업시장은 자유경쟁 완전경쟁시장입니까, 불완전경쟁시장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산물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병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윤준병 위원** 그게 즉답이 안 나오고 뭐 또 생각을 해요? 당연히 불완전경쟁시장이지요. 그러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일정 부분 시장 실패가 있다 하면 거기에 관해서는.....

○**윤준병 위원** 시장 실패가 있지, 지금.

그다음에 식량안보 많이 얘기하는데 농식품부가 추계하고 있는 사회적 편익은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식량안보와 관련돼서 사회적 편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병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것은 제가 지금 잘.....

○**윤준병 위원** 말로 그러면서..... 식량안보 가치를 시장 가치로, 사회적 편익으로 추계를 해야 그래야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것은 예전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런 것들 책정을 하면서 있는데 학자들마다 굉장히.....

○**윤준병 위원** 아니, 학자들마다 하는데 그걸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농식품부가 이 정도를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치로 인정하고 사회적 편익이 이 정도 돼서 그 정도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자할 상한선으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정책을 편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도별로 농식품부가 추계하고 있는 AMS는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AMS 한도를 말씀.....

○**윤준병 위원** 아니, 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지금 AMS 수준이다, 현 정부하에서. 금년도는 얼마, 이걸 추계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그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조 4900억이라고 하는 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AMS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많지 않다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룸이 얼마가 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가지고는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윤준병 위원** 우리 전북에서 예를 들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까지 만드는데 정부가 그것 하나 제대로 제도적인 장치 못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저는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부가 좀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WTO 자꾸 얘기하는데 보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려고 하면. 투입재 기타 보조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AMS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그 외의 내용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 머리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책 수행한 내용이라든지 이것 하면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른 수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빼 가지고 안 된다고만 해, '1조 4900억에

제한됩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한계가 있으면 ‘얼마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그 내용 판단해 가지고 그걸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의 현재까지의 입장은 안 된다는 것 외에 필수농자재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좀 받아 주세요. 상한선은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된 내용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전향적인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진짜 농민들…… 여러분들 안 된다고 그러면서 비료나 농약이나 농기계 이것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연이 넓어지면 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안 되지는 않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입법화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조금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걸 반대해. 그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포기하는 거지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예,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AMS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함에 있어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투입재 보조와 같이 AMS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만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형태의 보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이라고 하는 제도, 우리가 공익직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MS상에 잡히지 않는, 허용되는 보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저희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더 들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방식대로 만약에 필수농자재 지원법처럼 하게 된다면 단기간 내에는 아마 농가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고착화되면 몇몇 업체들의 담합이라든지 가격을 인하할 요인 자체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이 보조금의 최종적인 귀착점은 농가가 아니라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산자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불제 확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윤 국장, 예를 들면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 방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비료값이 높고 뭐 이런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생산자한테 직접 주면 돼

요. 그걸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그 내용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을 외양상 어떤 구조로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이지 투입재를 우리가 사서 줍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러니까요, 위원님.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할 의사가 있고 의지가 있으면 기타 생산자에 대한 적접보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그쪽에 녹여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않잖아요, 필수농자재법 해 가지고 딱 했는데 고민 않고 ‘이건 1조 4900억에 저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고.

저쪽도 안 돼요. 예전에 우리 1조 5300억인가 이렇게 하다가 1조 4900억으로 조정해 가지고 환불받아 가지고 한 적도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변동직불금 말씀이십니까?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생되면 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시도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전체 제도 자체를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국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시네.

국장님, 헌법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있다. 그렇지요?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이병진 위원** 예, 있습니다. 87년 10월 29일 날 개정돼서 88년 2월 25일…… 헌법은 지금 국장님이 지킨다고 단언하셨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이병진 위원** 지금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의 몇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수가……

○**이병진 위원** 14개예요. 알고 있는데 잠깐 잊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작년에 11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의 당진시도 됐고 진천군도 됐고 전북의 임실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전남의 고흥, 보성, 물론 전라북도자치도…… 충청남도의회도 올해는 하려고 그래요. 경남 합천군의회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분들이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아까 여러 말씀 나온 대로 농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워서 아마……

○**이병진 위원** 그것도 있지만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헌법에 보면 9장에 경제에 대해서 나와요. 123조 1항에 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연관시켜서 고민한 겁니다. 법을 지키려고 말이지요.

정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보호하고 있다, 있지 않다? 세 치 혀로 자꾸만 미끄러지같이 빠져나가고 있고 갖가지 이유를 대더라. 진정 보호하려고 한다,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안 한다. 각종 이유를 대요.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우리가 국민총생산이 일본을 초월했다고 자랑했다, 안 했다? 대답해 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했습니다.

일본의 농민 인구가 얼마나? 챗GPT에 물어보니까 130만~160만 나오더라고요. 우리보다 작아요. 우리 208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본 농업 예산이 얼마 된다? 27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 올렸어요. 우리 얼마나? 18조 8000억 원.

기재부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정말 농민 때문에 우리 정책국도 있고 농림수산부가 있는데 그런 파이트 정신이 없어요. 파이팅이 없어. 제가 농해수 7개월 이렇게 보니까 맨날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나불나불거려요. 직설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임팩트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진정 하는 모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인데 하지를 않아. 제 얘기가 틀렸으면 얘기해 봐요. 이론 제기해 봐요. 밤낮으로 불철주야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필수농자재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안 하려고 그래. 예산 늘리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 답답해 죽겠어요.

기재부하고 싸울래요, 싸우지 말래요? 싸우자고, 같이 가자 그러면, ‘이병진 위원, 나 싸우러 갈 테니 같이 가십시오’, 갈게요.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전체적으로 농민 말만 하지 말고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지 말고.

국방비 60조, 하나 사는 데 400억, 500억 들어가는 무기가 많아.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하잖아. 18조 7000억~8000억도 안 되는데 1조 원 늘리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 없다 얘기하고 맨날 식량주권 찾고 안보 찾고,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국장님, 제가 진정코 말씀드ري는데 한번 진정을 가지고 내가 필수농자재법을 어떻게 하면 법에 의거해서 해낼 수 있을까 오늘 가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욱 위원님.

○김상욱 위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생략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강정현 총장님, 옆에 계신 서세우 교수님께서 아까 발제 내용 중에 질문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총장님한테 좀 드려 보겠습니다.

농가소득 올리기 위해서는 수입을 보장하는 방법과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진술인 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경영소득 안정시키는 대책으로는 농업경영비 기복이 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영소득 안정화시키는 대책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농가의 입장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과 수입을 보장하는 방법……

○진술인 강정현 저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왜 그러신가요?

○진술인 강정현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진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사결정이 저희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소비자물가지수로 해서 국민의 소비자물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만 올라가면 수입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될 농업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수입 정책 때문에……

○진술인 강정현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부의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지요?

○진술인 강정현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가격 지지 정책보다는 농가의 비용 지원 부분을 확대해 줘서 농업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충식 처장님,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대, 2010년대에는 한때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이 있었어요.

○진술인 정충식 예,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과감하게 보조 정책을 펴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농기계 값이 왕창 올랐다는 거예요. 농자재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보니까 농가에서, 저도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오히려 보조 정책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건 농기계 공급업자이다, 그러니 이것을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농가의 직접 지원을 늘리고 필요한 농가가 지원받은 돈으로 농기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당시의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을 평가했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때 정책적으로 직접 지원 방식을 늘리자라는 것이 농업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기도 했는데요.

아까 윤원습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문제 중에 그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기자재가 인하 요인이 충분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정충식 농업의 전후방 산업이 있습니다. 전후방 산업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각종 농업 지원에 의해서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런데 사실 농민들은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또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그걸 다 알고 있다면 대책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유로 해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줄이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995년도에 농업소득이 노동자 월급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때 96%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4년 노동자 월급하고 농업소득은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면밀하게 살피고 과연 이것을 지원하는 방식이 농기계든 뭐든 그걸로 인해서 농업소득이 얼마큼 안정화되고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 원인을 찾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까 국장님은 우려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정충식 쳐장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는 지금 우리 기자재 산업의 산업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비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정 업체가 거의 시장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경우도 메이저 3사가 그 시장을 거의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점적인 성격의 시장이기 때문에 몇몇 생산자들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다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유인이 다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식이 아니라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지불제라든지 다른 형태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업체의 담합과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야말로 행정이 계도하고 나서야 할 문제이지 그게 필요한 정책인데 그것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농가를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물론 그건 공정거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 사실 경제학적으로도 당연히 보조금의 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그 보조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게끔 흘러갈 수 있다는 것들은 우리 경제학에서도 다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국장님, 잠깐만요.

필수농자재법이 도입되면 업체들만 좋은 일을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독점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규제하면 되지. 정부가 왜 있는 거예요? 규제 몰라요? 전기료나 수돗물 같은 거 다 독점하고 있지요.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규제하잖아요. 얼마든지 규제해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을,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가격을,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걸 자꾸 평계 대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 위원** 국장님은 필수농자재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서삼석 위원** 오늘 이 공청회에 차관이나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규정들이 혹시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없어요.

여기서 여러 의원들이 빌의한 필수농자재법은 선택과 비교해야 되는 그런 단어의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서삼석 위원** 답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우문으로 치부하세요.

필수농자재법을 왜 제정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농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거기에 따른 경영비 부담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 경영 안정화는 절반 이상이 요구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오전에 드렸던 내용이니까 덧붙이지는 않겠는데 저는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농자재 가격이 여타 이유로 인해서 올라서 발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발의 의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자재가 오른 만큼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특히 쌀값도 올랐더라면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혹시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는 쌀값과 관련돼서, 이게 투입된 가격이 올랐으니까 쌀값도 올랐어야 되는데 그 쌀값은 안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쌀이……

○**서삼석 위원** 아니, 농사짓는 기구를 사는 데 내가 지은 농작물을 팔아 가지고 충분히 소득도 보장하고 이익도 남아 가지고 기계도 살 수 있는 처지가 되면 굳이 이런 법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양곡관리법도 통과시켜 주고 농안법도 통과시켜 주면 되지, 간단하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러니까 쌀은 수급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삼석 위원**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급보다 우선은 가격 보장이에요, 가격 보장. 그래서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되고 특히 쌀값이 보장되면 적어도,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는 결례가 되는 말씀이지만 굳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저의 또 짧은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소득이 불안정한 농민들한테 이 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좀 해 드리자, 지원을 좀 해 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주변에 농사짓는 분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오늘 가서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불편하게 물어봐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양곡관리법, 농안법 만들면 이 법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궁여지책이 아니라 오죽하면 이 법을 만들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 주변에 계시는 농사짓는 분들한테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법안소위에는 차관이 나가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럴 겁니다.

○**서삼석 위원** 이 공청회가 법안소위만도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없으면 들어가세요.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기후위기 때문에 재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농자재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의 농업소득이나 농가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계속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인구 감소, 지방소멸로 인해서 농촌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세 분 진술인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필수농자재를 입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도자 사무총장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강정현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위반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교수님께서도 좀……

○진술인 서세욱 그 위반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중복이……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좀 물어보는 거고요.

또 사무처장님.

○진술인 정충식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 이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은 딱,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의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는 딱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WTO 국제조약 위반입니까, 사무총장님?

○진술인 강정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교수님, AMS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위반입니까?

○진술인 서세욱 AMS 보조 총합의 상한이니까요, 상한을 넘으면……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은 아니잖아요?

○진술인 서세욱 그러니까 상한……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지원 법률을 만드는 것이 위반, WTO 조약에 위반되느냐고요. 그 상한 안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술인 서세욱 상한 안에서 지원하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상소 기능이나 어떤 제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처벌 문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떠나서 상한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서세욱 예, 상한 내에서.

○이원택 위원 우리나라 정부가 AMS 보조금이 조금 있지만 예를 들면 18년에 29억, 19년에 792억, 20년에 28억입니다. 또 그 전에 13년, 14년은 0원이었고요. 다만 17년에는 1조 4000 정도 됐고 또 16년에는 7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는 100억, 200억 그렇게 됩니다. 그 범주 안에서 하면 되는 거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유연하게 생산 직불로 편입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국제조약에도 위반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과도한 시장 개입인가? 국장님께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농산물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일들은 이 필수농자재 외에도 또 다른 산업 분야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지원이 의무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법안 발의하신 분 중에 의무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은 국장님, 두 분뿐이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이원택 위원** 네 분은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건 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이원택 위원** 두 분만 '지원한다'예요, 그것도 차액의 얼마를.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이원택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무화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네 분이나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정부가 앞으로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이 법안의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주류·에너지 또는 농자재 또 농기계까지 확대할 건지 이런 지원 대상에 대한 실용적인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고.

또 가격 상승 시에 할 거냐 아니면 최근 3년 평균 가격 대비 상승했을 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어떤 법률에 위반이거나 위헌인 것도 아니고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MS 한도 범위에도, 충분히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희용 간사님이나 여야가 좀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60%, 70% 정도라도 세팅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좋습니다.

이원택 간사님이 제안을 했는데 정희용 간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술인분들 사실 오전 중에 끝나셨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바쁜 일정이 있었을 텐데 소중한 시간을 공청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진술인분들 또 정부 측에서도 우리 농가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또 농업경영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경영비를 우리가 지원 혹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하는 점, 고민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립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미 생각을 정리한 분도 있으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청회 자리가 진술인분들의 다른 생각을 들어 보고 이 제정법을 우리가 향후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진술인분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토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또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 수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더 큰 타격이 있고 또 과거에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던 부분들도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근원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오늘 국장님 혼자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앞선 질의에서 농어업경영체법이 통과됐으니 그 부분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는 필수농자재법 제정 취지를 그 조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 필수농자재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물론 조금 더, 우리 경영체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아마 필수농자재법의 제정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지금 경영체법에 담겨 있는 조항으로, 충분히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가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글쎄, 예산만 넉넉하게 집행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측에서도 여러 말씀을 오늘 들었고 공청회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열어 놓고 법안소위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오늘 진술인분들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 윤준병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윤 국장님, 거기서 들으세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특히 농업 부문, 농산물에 대한 재정지출에 어느 규모가 나름대로 감내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농업 분야의 가장 큰 가치가 식량 안보니까 식량 안보와

관련돼서 사회적 편익이 총 얼마나 되는지, 직접적인 추계가 아니라 간접투입비로 산출한 사회적 편익 이것을 좀 판단해 보고 거기에 비해서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 이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우리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대안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제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캡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대안을 좀 제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WTO의 AMS와 관련된 내용 얘기가 나왔는데 2020년부터 AMS에 대해서 WTO에 자료보고를 안 해요. 우리가 산출도 않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그래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만 진행돼 왔고 이후에는 AMS 자체를 산출도 않을뿐더러 보고도, 통보도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도 WTO 체제의 농산물과 관련된, AMS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정책이 변경됐는지 유무에 대한 판단이 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 지금 윤준병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거요 저희 상임위 전체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AMS 관련해서는 좀 이상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요. 상임위원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윤준병 위원님 매우 중요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정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편의 계산 이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농림부가 이것 자료 갖고 있어요, 정책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어기구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편의, 이런 비용 추계를 다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건 최근에 아마 연구한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최근에는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공익적 가치와 관련돼 추계된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있어요? 있으면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진술인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이 많이 어렵잖아요? 정말 붕괴 직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 보면 말도 못 하게 어렵거든요. 이것은 세 분 진술인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뭔가 해야 돼요. 지금 농업·농촌 이대로 놔두면 아마 10년 후에는 농업·농촌의, 지금 농업인구 연령이 평균 한 70대가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이 기회를 놓치면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이니 농안법이니 필수농자재법이니, 오늘 오전에 한우법도 그런 차원에서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필수농자재법 관련해서도 세 분 진술인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서세욱 교수님은 예산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술인 서세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 국장님,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세 분 진술인들은 다 찬성하는데 정부만 반대를 왜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농업·농촌이 없으면 농림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요. 안보는 공공재예요, 공공재. 윤준병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농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공익적 가치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데에서 직불금을 주는 거예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잖아요. 그게 정말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왜 엄청난 직불금을 주면서 농업·농촌을 살리려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고 그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재부 정책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농림부 정책국장이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농업정책을 합니까? 그러니까 소귀에 경 읽기 식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법안 제출해서 만들어 내면 정부가 거부권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농망법, 농망의원이라고 낙인 찍어 가지고 공격하고, 장관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게 참 나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가 열어 놓고 좀……

지금 보세요, 정충식 사무처장님.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는 논농사 20마지기, 4000평이지요? 이것 농사지으면 머슴 하나 두고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3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농업의 경영비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경영비가 오르다 보니까 가을에 손에 쥐는 돈이 400만 원이랍니다, 20마지기 농사지어 가지고 400만 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타는 어르신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현장의 이런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진술인 정충식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농촌·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영농비용도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인공호흡기 꽂는 거예요, 지금 농촌 숨 깔딱깔딱 넘어

가는 것. 그런데도 이게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논리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다행히 정희용 간사님은 찬성을 해요, 찬성. 그래서 법안소위 가서 잘 논의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강정현 사무총장님, 서세욱 교수님, 정충식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상욱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
축산정책관 안용덕
전국한우협회
회장 민경천

○출석 진술인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현(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전상곤(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정승현(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에 대한 공청회
강정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세욱(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충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